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직 및 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29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99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직 및 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직 및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 공무원직근로자 정원표

일반직 란의 '71' 을 '72' 로 하고, 체육직 란의 '27' 을 '26' 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